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3. 21 선고 2017가합58227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독촉]

전 문

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

피고1. A 주식회사

2. B

변론 종결2018. 2. 28.

판결 선고2018. 3. 2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,560,497원 및 별지2 목록 '청구금액'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'청구일'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7. 1. 5.까지는 연 11%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1. 17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판사김형훈

판사김신유

판사송현정

별지